

의안번호	2203157
의 퇴 인	권칠승 의원
회 답 일	2024. 11. 11.
추 계 번호	24E312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가구 승용자동차 구입 감면 대상범위 확대 및 일부 한도폐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가구 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범위를 현행 미성년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 자녀 양육자로 확대하되, 미성년 3명 이상 자녀의 경우 현행 3백만원인 면제 한도를 폐지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5년 2,210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조 684억원(연평균 2,137억원) 감소 예상

[표 1] 다자녀가구 승용자동차 구입 감면 대상범위 확대 및 한도폐지 시 세수효과: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전체 세수효과	-2,210	-2,173	-2,136	-2,100	-2,065	-10,684	-2,137
- 개별소비세	-1,546	-1,519	-1,494	-1,469	-1,444	-7,471	-1,494
- 교육세 ¹⁾	-464	-456	-448	-441	-433	-2,241	-448
- 부가가치세 ²⁾	-201	-198	-194	-191	-188	-971	-194

주: 1) 교육세는 부가세로서 개별소비세액의 30%에 대해 부과

2)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등 포함)의 10%에 대해 부과되며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조건부면세)	○ 다자녀가구 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 등 감면 대상범위 확대 및 일부 감면한도 폐지 - (현행) 3자녀 이상 양육자, 3백만원 - (개정안) 2자녀 양육자의 경우 3백만원, 3자녀 이상 양육자의 경우 한도 없음	조세지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8조(조건부면세)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은 2025~2029년 5년간으로 설정
 - 2024년 통과된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후부터의 승용자동차 판매분에 대해 적용
- 추계기간 동안 개별소비세 자동차분 세율(5%) 및 기준판매율(18%)은 가장 최근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개별소비세 기준판매율제도¹⁾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어 국산 승용자동차 과세표준이 18% 인하되며 향후 추계기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 기준판매비율은 3년간 적용되며²⁾ 3년 임기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동 비율의 적용 방법 및 범위 등을 결정³⁾
- 다자녀 1가구당 신규 자동차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가구 비중 및 1가구당 감면금액은 미성년 2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
 - 현행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의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실적이 미집계되기 때문에, 관련 유사 제도(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

1)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유통 관련 판매비·이윤: 18%) 만큼 차감하는 제도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2항

3)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국세청훈령 제2564호) 제6조 및 제9조

- 가구내 미성년 자녀 인원수 분포는 승용자동차 구매모델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아 신규등록 승용자동차의 모델별 다자녀 가구 구매대수 비율은 동 가구의 전체 가구 대비 비중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
 -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승차정원이 많은 자동차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관련 통계자료 미집계로 그 연관관계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규등록 승용자동차의 모델별 판매대수는 가구내 미성년 자녀 인원수 분포와 무관한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제도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미반영
 - 개정안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구입 감면한도 변화에 따라 승용차 구입대수 증가 등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제도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미반영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1) 제도 개요

- 2023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개별소비세(한도 3백만원) 등 감면⁴⁾
 - 개별소비세와 함께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및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등 포함한 공급가액의 10%) 감면

(2) 추계방법

-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감면 대상범위 확대(현행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와 감면 한도폐지(현행 3백만원에서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한도폐지)로 나누어 2023년 기준 규모를 추계
- 이후 추계기간 동안 세수효과는 감면 대상범위 확대(현행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미성년 2자녀 가구수의 최근

4) 정부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다자녀가구 승용차 전체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실적은 6,900억원

증감률(2023년 △3.4%)⁵⁾ 및 소비자물가상승률⁶⁾을 적용하고, 감면 한도폐지(현행 3백만원에서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한도폐지)의 경우는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수의 최근 증감률(2023년 △4.5%)⁷⁾ 및 소비자물가상승률⁸⁾ 적용

[표 2]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가구수 현황: 2018~2023년

(단위: 만호,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가구수[가] (증감률)	527.2 (△29)	507.7 (△37)	494.9 (△25)	482.7 (△25)	469.1 (△28)	459.1 (△21)
미성년 2자녀 가구수[나] (증감률)	261.6 (△39)	249.2 (△47)	244.0 (△21)	236.2 (△32)	224.5 (△49)	216.9 (△34)
(전체 가구수 대비 비중)[나/가]	(0.5)	(0.5)	(0.5)	(0.5)	(0.5)	(0.5)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수[다] (증감률)	54.5 (△39)	51.6 (△53)	51.1 (△10)	49.0 (△41)	45.6 (△70)	43.5 (△45)
(전체 가구수 대비 비중)[다/가]	(0.1)	(0.1)	(0.1)	(0.1)	(0.1)	(0.1)
미성년 3자녀 이상 대비 2자녀 가구 비율[나/다]	4.80	4.83	4.77	4.82	4.93	4.98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감면 대상범위 확대에 대한 세수효과) 2023년 기준 1가구 평균 개별소비세 감면액과 미성년 2자녀 가구 중 승용차 구매 가구수를 추정한 후, 이를 곱하여 개정안의 감면 대상범위 확대에 대한 세수효과 추계

- (1가구 평균 개별소비세 예상 감면액) 2023년 기준 국산·수입 신규자동차의 판매대수·판매금액⁹⁾을 바탕으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초과 승용차의 판매대수·판매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가정하여,¹⁰⁾ 승용차 1대당 개별소비세 한도에 따른 판매대수·판매금액 및 감면전후 세액을 추정한 후, 승용차 1대

5)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는 가구주 연령에 따라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만 가구수 장기 추계)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7)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서는 가구주 연령에 따라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가구를 대상으로만 가구수 장기 추계)

8)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9)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3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분석」, 2024.1.)

10)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엔디블유코리아, 불보자동차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등 홈페이지 게재 2023년 기준 가격자료 참고하여 국산차의 경우 7,317만원{=감면한도(300만원)/[개별소비세자동차세율(5%)×(1-개별소비세기준판매율(18%))]}, 외산차의 경우 6,000만원[=감면한도(300만원)/개별소비세자동차세율(5%)] 이상의 가격대 차량으로 하고, 판매대수는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365'www.car365.go.kr) 신차 등록대수 참조

평균 감면액을 159만원으로 추정

- 다자녀 1가구당 신규 자동차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므로, 1가구 평균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승용차 1대 평균 감면액과 동일한 159만원으로 추정
- (미성년 2자녀 중 승용차 구매 가구수 추정)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중 승용차 구매 가구수 추정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미성년 2자녀 중 승용차 구매 가구를 10만 가구로 추정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동차 취득 관련 지방세조세특례(취득세 감면) 제도¹¹⁾의 최근 대상가구수(2023년 2만 3,313)¹²⁾ 및 신규 자동차 중 승용차 비중(85.2%)¹³⁾을 곱하여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중 승용차 구매 가구수를 2만 가구로 추정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가운데 승용차 구입과 관련한 개별소비세 감면대상 가구 비중은 미성년 2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승용차 구매 미성년 2자녀 가구수는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수(2023년 44만) 대비 미성년 2자녀 가구수(217만) 비율(4.98)을 적용하여 약 10만 가구로 추정
- (2023년 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 조세지출 규모는 2,251억원으로 개별소비세 1,574억원, 교육세 472억원 및 부가가치세 205억원 감소 예상
 - 개별소비세 1,574억원(= 159만원/가구 × 10만 가구)에 대한 부가세로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급가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등 포함)의 10%에 대해 부과

□ (감면 한도폐지에 대한 세수효과) 2023년 기준으로 개정안 적용에 따른 1가구 평균 개별소비세 감면액 및 적용대상 가구수를 추정한 후, 이를 곱하여 개정안의 감면한도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 (1가구 평균 개별소비세 감면액) 2023년 기준 신규등록 승용자동차의 차종별 세전가격¹⁴⁾ 및 판매대수¹⁵⁾를 바탕으로 세전가격이 개정안의 한도변화에 영향을 받는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폐지에 따른 승용차 1대 평균

11) 미성년 3자녀 이상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명 이하 무한도),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 중 우선신청 1대에 대해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중 대체취득 등(동법 제22조의2제2항)의 경우는 제외

12) 2022년 2만 4,409(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에 대해 2022~2023년 3자녀 이상 가구수 증감률(△4.5) 적용

13) 2023년 12월말 기준 신규등록 자동차 1,759천대 중 승용차 1,498천대(85.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949천대」, 2024.1.19.)

14)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홈페이지 게재 2023년 기준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세율(개별소비세율 5%, 교육세율 30%, 부가가치세율 10%) 및 개별소비세 기준판매율(18%)을 고려하여 주요 차종별 평균 세전가격 추산

15) 2020년 기준 차종별 신규등록 승용자동차 대수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출고수 증가율 [2020~2023년간 국산차 2.6% 및 외산차 36.9% 증가(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nts.go.kr)] 적용

추가감면액을 145만원으로 추정

- (승용차 세전가격) 국산차는 기준판매율(18%) 적용으로 외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까지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의 한도변화에 영향을 받는 평균가격이 외산차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므로¹⁶⁾ 평균 세전가격이 국산차 7,317만원 및 외산차 6,000만원¹⁷⁾ 이상의 경우에서 개정안의 한도변화에 따라 세수변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승용차 판매대수) 개정안의 한도변화에 영향을 받는 수준보다 가격이 높은 승용자동차 대수는 전체 156만대 중 12만대(7.7%, 국산차 1만대 및 외산차 11만대)로 추산
- (개별소비세 감면액) 상기 차종별 승용차 1대당 세전가격을 기준으로 개정안의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판매대수를 적용하여 추가된 차종별 개별소비세 감면액을 합산하여 전체 감면액을 1,732억원(개별소비세 1,211억원, 교육세 363억원, 부가가치세 157억원)으로 추계
- 다자녀 1가구당 신규 자동차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므로 1가구 평균 개별소비세 감면액을 145만원(= 1,732억원 / 12만가구)으로 추정
- (개정안 적용대상 가구수) 다자녀 1가구당 신규 자동차 1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개정안의 한도변화에 영향을 받는 가구수 및 신규 승용차 대수의 전체 대비 비중이 동일하므로, 개정안의 범위확대에 영향을 받는 미성년 3자녀 이상 2만 가구 중 7.7%(개정안의 한도변화에 영향을 받는 수준보다 가격이 높은 승용자동차 대수는 전체 156만대 중 12만대)인 1,525 가구를 개정안의 감면한도 폐지의 영향을 받는 적용대상 가구수로 산정
- (2023년 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폐지에 따른 추가 조세지출 규모는 22억원으로 개별소비세 15억원, 교육세 5억원 및 부가가치세 2억원 감소 예상
 - 22억원 = 145만원/가구 × 1,525가구

16) 외산차가 국산차보다 고가 차종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적용대상 차량의 평균가격은 국산차 7,215만원 및 외산차 1억 37만원 수준에서 형성

17) 국산차의 경우 7,317만원{ = 감면한도(300만원) / [개별소비세 자동차 세율(5%) × (1 - 개별소비세 기준판매율(18%))] }, 외산차의 경우 6,000만원[= 감면한도(300만원) / 개별소비세 자동차 세율(5%)]

(3)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다자녀가구 승용자동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범위를 현행 미성년 3명 이상 자녀에서 2명 이상 자녀 양육자로 확대하되, 미성년 3명 이상 자녀의 경우 현행 3백만원인 면제 한도를 폐지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5년 2,210억원 등 2025~2029년 5년간 총 1조 684억원(연평균 2,137억원) 감소 예상

[표 3] 다자녀가구 승용자동차 구입 감면 대상범위 확대 및 한도폐지 시 세수효과: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전체 세수효과	-2,210	-2,173	-2,136	-2,100	-2,065	-10,684	-2,137
- 개별소비세	-1,546	-1,519	-1,494	-1,469	-1,444	-7,471	-1,494
- 교육세 ¹⁾	-464	-456	-448	-441	-433	-2,241	-448
- 부가가치세 ²⁾	-201	-198	-194	-191	-188	-971	-194

주: 1) 교육세는 부가세로서 개별소비세액의 30%에 대해 부과

2)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등 포함)의 10%에 대해 부과되며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 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